

2020년 [공립]어린이집 감사 결과 보고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0. 10. 13. ~ 10. 15. (3일간)
- 감사대상 : 공립어린이집 3개소

어린이집	원장	인가일	보육교직원현원	아동정원(현원)
○○○○○	●●●	2019.03.01.	9	32(26)
□□□□□□□□	■ ■ ■	2019.03.01.	16	83(70)
◇◇◇◇◇	◆◆◆	2019.10.01.	9	67(62)

- 감사범위 : 2019년 개월일 ~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반 : 감사계장 외 5명
- 감사중점
 - 어린이집 운영 일반[아동관리, 운영위원회, 특별활동, 급간식비]
 - 재무회계[급여, 결산, 기타운영비, 적립금, 퇴직금]
 - 보육교직원 관리[근로계약, 건강검진, 보수교육]

II 감사결과

- 총괄 현황

(단위:건)

구분	행정상			재정상	
	계	시정	주의	계	여입
계	5	2	3	1/133,980원	1/133,980원
본처분	2	0	2	-	-
현지처리	3	2	1	1/133,980원	1/133,980원

III 종합평가

- 「2020년 연간감사계획」에 의거 2020. 10. 13. ~ 10. 15.(3일간) 관내 2019년 개월 공립어린이집 대상 ‘운영기준 준수, 재무·회계, 보육교직원 관리, 건강·영양·안전 및 시설 등 어린이집 운영 관리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
- 대체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, 보육교직원 관리, 영유아 안전관리, 보육교직원 보수지급 규정 미준수 사례가 지적되었음.
-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등 미실시, 종사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, CCTV 관리 부적정, 보육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, 영유아의 안전사고 보고 누락 등이 있었음.
-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·보완 및 교육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, 가족행복과에서는 보육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.

IV 주요 지적사례

I 사례 1 | 보육교직원(원장) 건강검진 등 미실시

-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 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

근거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제33조(건강진단)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(건강진단)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(건강진단 대상자)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,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(결핵검진등)

↳ 건강검진 등(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피부질환 검사) 미실시 :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어린이집

Ⅰ 사례 2 | 성범죄 경력,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
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문헌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
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
↳ 성범죄 경력,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: □□□□□□□□□어린이집

Ⅰ 사례 3 | CCTV 관리 부적정

-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결과를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-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 할 수 있음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
 - 어린이집 출입구
 -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(담장)

문헌 「□□□□□□□□□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」 제14조(장비관리)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(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)

↳ CCTV 관리 부적정 : □□□□□□□□□어린이집

Ⅰ 사례 4 | 보육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

-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,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문헌 보건복지부 「2019년 보육사업안내」

↳ 보육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: ◇◇◇◇◇어린이집

Ⅰ 사례 5 Ⅰ 영유아의 안전사고 보고 누락

-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<서식 Ⅱ-11>에 의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근거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3조[별표8](어린이집 운영기준)
보건복지부 「2020년 보육사업안내」

↳ 영유아의 안전사고 보고 누락 : ◇◇◇◇◇어린이집